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221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
“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”  
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#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

#### 1. 지원대상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자

- 지원시설 : 콘센트연결형으로 설치용량 200W ~ 1kW미만급 제품
-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태양광 설치 시공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

#### 2. 사업기간 : '18.3.9. ~ 11.30.(선착순 접수,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)

#### 3. 지원규모 : 설치 개소 당 10만원 지원(선착순 150개소)

#### 4. 지원절차 : 변경 후 방식 별도공고(서울시) 이전까지는 기존방식 적용

기존	변경 후('18 상반기 중)
<pre>graph LR; 시민[시민] -- 1. 상담 및 신청 --&gt; 업체[업체]; 업체 -- 2. 설치 --&gt; 자치구[자치구]; 자치구 -- 3. 보조금 지급 --&gt; 시민; 자치구 -- 3. 보조금 지급 --&gt; 업체</pre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·지원 ⇒ 세부 절차는 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별도 공고 예정</li></ul>

※ 신청자는 총비용에서 서울시 및 중구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, 보조금(서울시 및 중구)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

-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고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전을 수합하여 매월 초 중구청 환경과로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

## 5. 보급업체 및 제품 : 총 18개 업체 76개 제품(붙임 참조)

-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 (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620호(2018.3.9.))에 의하며, 이후 보급업체 및 제품 추가·변경 시 서울특별시 추가 공고에 따름

## 6. 유의사항

-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 업체 선택부터 설치 완료시까지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·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와 중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
- 중구 초기지원 계획 공고 시행 전 금년도 설치한 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, 지원규모는 예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급업체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
- 서울특별시 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중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(별지 제2호 서식) ※ 이전·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
-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,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## 7. 기타

- 그 외 시공기준, 기타 의무사항은 아래 서울특별시 공고문에 따름
  -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168호(2018.1.23.) :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
  -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620호(2018.3.9.) :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
-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(☎02-3396-56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20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목록 1부.  
2.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서식 1부. 끝.